

구강위생관리연구소 규정 (개정 2017.05.01)

제정 2013. 02. 28 개정 2017. 05. 01

제1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및 국민구강보건 증진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 제반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구강위생관리연구소(Oral Hygiene Care Institute, 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경동대학교 내에 둔다. (개정 2017. 05. 01)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.
2.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구강보건 협력 사업.
3.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.
4. 구강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용품 개발.
5. 구강보건 관련 교재 및 연구보고서 발간 및 출판.
6.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.

제4조 (연구원의 구성)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및 관련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특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초빙된 외부전문가는 위촉 연구교수 및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되고, 수행하는 연구과제 종료시 임용계약이 자동해지 된다.

③ 상근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며 활동이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소장 등) ① 연구소에 소장 및 부소장을 두되,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.

제6조 (연구팀)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팀장)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촉 연구 교수, 위촉 연구원 및 위촉 연구보조원) ① 위촉 연구 교수는 연구조교수, 연구부교수, 연구교수로 구분하되,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
② 위촉 연구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임명할 수 있다.

③ 위촉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생 중 우수한자로 하여 임명할 수 있다.

④ 위촉 연구 교수, 위촉 연구원 및 위촉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
제9조 (사무원) 본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사무원을 임명, 해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11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2조 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는 재적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심의 사항)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2.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
3.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
4.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
5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
2. 창조금과 기타 보조금
3. 본 대학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

제15조 (연구비 및 관리비)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.

제16조 (예산, 결산) ①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